

'2025

당진 사랑마루 이용계약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본 장의 목적)

본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 1·2·3·4등급 이용자, 또는 일반입소자에 대해서 입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소절차 및 정보를 공개하여 입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입소정원)

당진사랑마루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47명으로 한다.

제 3 조 (이용정원에 관한 특례)

1.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어르신(이하“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2. 1항의 경우 정원의 5%(소수점이하반올림) 범위 내로 한다.
3. 어르신의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퇴소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입소를 신청할 경우 특례입소자로 입소 할 수 있다.

제 4 조 (모집 방법)

1. 모집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요양등급 1.2.3.4등급(3~4등급의 경우 시설급여자) 판정받은 어르신과 등급외 이용자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인터넷 및 홍보지를 통하여 모집하며, 입소신청서를 받는다.
3. 이용신청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제출 한다. 단, 등급외 이용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5 조 (신체구속 금지)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체구속이나 어르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단 어르신이 타 어르신의 생명, 신체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제 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어르신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어르신의 신원인수에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 ① 어르신이 계약 기간 중이라도 신원인수인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② 어르신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가 있다.
 - ③ 어르신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④ 어르신의 서비스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을 요청 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어르신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어르신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어르신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어르신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어르신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④ 어르신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제 7 조 (이용료 변경방법)

1. 장기요양보험 어르신은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변동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변경내용을 고지한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변경으로 비용의 변경시 내용을 고지한다.

제 8 조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9 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을’ 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갑’ (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 10 조 (입소 · 이용료 납부)

1. ‘갑’ 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지정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 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납부하기로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2.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3. ‘갑’ 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농협 301-0077-7810-11 김종진: 당진사랑마루)로 한다.
4. ‘갑’ 또는 ‘병’ 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 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1일)** 2011.3.7., 2012.1.1., 2013.1.1., 2014.3.1., 2015.1.1., 2016.7.1., 2017.1.1., 2018.1.1., 2019.1.1., 2020.1.1., 2021.1.1. 2022.1.1. 2023.1.1., 2023.8.11., 2024.1.1., 2025.1.1. 개정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등급외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90,450원	83,910원	79,240원	38,000원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원			
	식재료비(1식)	4,000원			
	간식비(1회)	0원			
	이/미용료 등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어르신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경감자(건강보험료 순위 25%~50%)	12%	9%
경감자(건강보험료 순위 0%~25%)	8%	6%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9%, 7.5%, 6%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어르신이 부담한다.
다만,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등급별 세부내역

1. 입소비용(30일 기준)			* 진료 & 약제비 별도		
구분 (1일 추가)	급여액		비급여액 및 보호자 부담액 합계		
	공단부담금 (80%)	본인부담금 (20%)	식비/경관식	계(일반 20%)	계(12%, 8%)
1등급	90,450원	2,170,800원	542,700원	902,700원	685,620원
2등급	83,910원	2,013,840원	503,460원		577,080원
3등급	79,240원	1,901,760원	475,440원	863,460원	662,070원
등급외	38,000원	본인부담금100%	1,140,000원	835,440원	561,380원
			1,500,000원		
2. 입소비용(31일 기준)			* 진료 & 약제비 별도		
구분 (1일 추가)	급여액		비급여액 및 보호자 부담액 합계		
	공단부담금 (80%)	본인부담금 (20%)	식비/경관식	계(일반20%)	계(12%, 8%)
1등급	90,450원	2,243,160원	560,790원	932,790원	708,470원
2등급	83,910원	2,080,960원	520,240원		596,310원
3등급	79,240원	1,965,150원	491,280원	892,240원	684,140원
등급외	38,000원	본인부담금100%	1,178,000원	863,280원	580,090원
			1,550,000원		

제 11 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 12 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 13 조 (퇴소)

- ① ‘을’은 제11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 14 조 (입소물품) ‘갑’은 시설 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 15 조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시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16 조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침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 17 조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8 조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 ②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직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시설물의 손괴나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모든 직원은 시설의 각종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20 조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 21 조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제 22 조 (식사 및 간식)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어르신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침실의 배정) ‘갑’의 침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 24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 25 조 (기록 및 공개) 어르신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26 조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27 조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1. 수집대상정보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 입소생활 내용 및 사진

2.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 사진활용 : ☒ 보호자 소식지 ☒ 행사용 동영상 ☒ 홈페이지 게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자료 등 개인정보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보존)하고,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의 이용기간은 급여계약 종료일까지로 함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이 용 자 : (인)

보 호 자 : (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동의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동의

1. 설치목적 : 이용자의 안전관리, 방범, 화재예방, 사고발생에 대한 정보로만 사용한다.

2. 설치장소 : 현관, 거실, 복도, 생활실, 업무공간 등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은 제외됨)

3. 촬영방법 :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4. 처리방법 :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삭제

5. CCTV 열람 대상 : CCTV 녹화영상에 동의한 입소어르신 또는 법적보호자(신분증 확인 필요)

6. CCTV 열람 절차 :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 확인을 위해 열람신청서를 작성 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
(지정장소 외 열람은 불가능하며, CCTV 녹화영상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없음)

2025년 월 일

사용자 당진사랑마루요양원 대표

입소자 이름 (印)

보호자
(대리인) 이름 (印)